

【 국내금융 뉴스 】

금융위, 금융회사의 외화건전성 안정장치 마련

- 정부는 최근 금융회사의 외화건전성이 적극적 위기 대응 및 금융회사의 자구 노력 등을 통해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됨에 따라 향후 위기 재발방지를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해 나갈 방침임.
 - 금융안정위원회(FSB)도 신흥국에 대해 외화유동성 위기 발생에 따른 시스템 불안정 리스크를 축소하기 위한 조치 마련을 권고하고 있으며, 이에 우리 정부도 지난 9월 25일 금융회사의 외화건전성 제고 및 감독 방안을 마련한 바 있음.
- 주요내용으로는 크게 개별 금융회사의 외화건전성 감독 강화 및 외환부문의 거시건전성 감독강화를 꼽을 수 있음.
 - 금융회사의 외화건전성 감독 강화와 관련해서는 외화유동성 비율 규제 정비, 외화유동성 리스크 관리 기준 신설, 외환파생상품리스크 관리 기준 신설, 중장기재원 조달 비율 강화, 외화자산한도(레버리지 비율) 규제 도입, 합리적 환헷지 관행 유도 등이 있음.
 - 한편, 외환부문의 거시건전성 감독 강화는 모니터링 강화를 통한 이상징후 포착 및 유사시에 대비한 관행 유도 등임.
- 이번 조치는 금융회사의 외환건전성 제고 및 위기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시스템 정비에 초점을 두었으며, 원활한 제도 시행을 위해 은행권에 우선 도입하고 향후 제도 정착 추이 및 경제 상황 변화 등에 맞추어 탄력적으로 운영할 방침임.
 - 은행권의 경우 원칙적으로 모든 은행에 동일하게 적용하고 기타 금융회사에는 이번 조치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되 은행권의 시행 성과를 보아가면서 추가 적용범위를 검토할 예정임.
- 본 규정의 적용시기는 내년초 시행을 원칙으로 하되, 유동성 가중치 부여 및 외화안전자산 보유 수준에 따라 도입 초기 은행의 적응기간을 감안한 2010년 7월부터 시행 예정임.

(금융회사의 외화건전성 제고 및 감독 강화 방안, 금융위원회 금융시장분석과, 11/19)